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박승진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 경, 김인제, 민병주, 박강산, 박수빈, 박유진, 박철성, 봉양순, 서준오, 성흠제, 송도호, 송재혁, 신동원, 왕정순, 유정희, 이민옥, 이병도, 이봉준, 이소라, 이영실, 임종국, 전병주, 최기찬, 최재란, 한 신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그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통제기능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,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 위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하게 됨
-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(안 제21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관리 및 운영)</p> <p>① ~ ⑥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<u>2년</u> <u>으로</u>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관리 및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3년 이내</u> <u>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2항은 주거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